

양구군의회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
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양구군의회 의장 **정 광**



2013년 1월 1일

양구군의회 규칙 제 // 호

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

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, 제67조제2항,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날로부터”를 각각
“날부터”로 하고, 제12조제5항 중 “정례회”를 “정례회”로 한다.

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44조(표결결과 선포)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
서 선포하여야 한다.

제74조제4호 및 제80조제4호 중 “깍연”을 각각 “흡연”으로 한다.

제70조제1항,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72조제1항 및 제2항, 제82조
제1항·제2항·제4항, 제85조제1항, 제86조제1항 중 “윤리심사위원회”를
각각 “윤리특별위원회”로 한다.

제75조 본문 중 “자와”를 “사람과”로 하고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79조제1항 중 “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하고, 제1호에서 제2호까지 및 제4호, 같은 조 제3항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.

제82조제3항 단서 중 “법 제75조”를 “법 제83조”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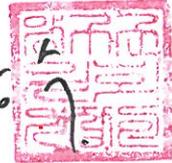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양구군의회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구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양구군의회 의장

김기환



2013년 1월 1일

양구군의회 규칙 제 12 호

양구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양구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2] 중 제목 “의회배지 모형도 및 규격”을 “의원배지 모형도 및 규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양구군의회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
양구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양구군의회 의장

정 광



2013년 1월 1일

양구군의회 규칙 제 ㄱ 호

양구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

양구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양구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”을 “양구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”으로 한다.

[별표] (주) 5호 ⑨ 중 “발급번호”를 “주민등록번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